

부산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4948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김동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창

변론 종결 2020. 4. 10.

판결 선고 2020. 5. 8.

제 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15. 선고 2018가단547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유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주식회사 B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라 한다)는 유류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7. 8. 24. F, B와 사이에 구매자로서 F, B로 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유류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B회사 D주유소를 원고가 인수하여 2018. 1. 30.까지 운영하고 현 거래처 G과의 원활한 거래가 안될 시에는 2018. 1. 30.로 D주유소를 정리하기로 한다.

2. D주유소를 정리하는 날짜(2018. 1. 30.)를 기준으로 손실금액은 양자 간의 50%씩 손실을 감수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각 150,000,000원씩 투자하여 거제시 소재 C주유소 및 삼척시 소재 D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경영악화로 인하여 위 주유소들을 폐업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D주유소에서 발생한 손실을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동업으로 인하여 총 81,683,86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손실 중 50%에 해당하는

40,841,930원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피고 부담 부분손실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피고 부담 부분 손실액중 원고가 구하고 있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7. 12. 14.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손실금액의 50%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소재 C주유소 및 삼척시 소재 D주유소를 인수·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120,000,000원을 투자한 점(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위 120,000,000원 외에 G에 직접 송금한 30,000,000원까지 합계 1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한 2017. 12. 14. 원고와의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원고에게 위 D주유소 사업 일체, 주유소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30,000,000원 및 14,957,700원 상당의 유류 재고를 양도하였고 I 탱크로리 차량 및 J 윈스툼 차량도 무상으로 임대한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7. 12. 15.경 위 주식회사 K의 대표 L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변제로 3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게 손실 부담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투자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와의 동업으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손실이 발생한 사실 내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손실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 주장

원고는 또한, 피고가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을 기망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익금을 원고

몰래 가져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실 혹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영표, 판사 이재덕, 판사 홍준서